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4차년도 (... ~ ...)						
5차년도 (... ~ ...)						
계						

총 연구개발기간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

원장 ○ ○ ○

직인

주관연구기관 :

대표자 ○ ○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성명 ○ ○ ○

(인)

소속 :

직급(위):

[붙임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별첨)

제1조(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붙임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라 한다)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①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천원

(나) 제2차: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이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세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세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③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위탁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④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건별 지급대상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의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고 연구수행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등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일체(이하 "관련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13개월 이상이며 2개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계속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하여 연차/단계 실적·계획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성과 등의 공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성과가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를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진흥원장 또는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진흥원장 또는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집행잔액 중 정부지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진흥원장은 연구수행기관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①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은 국가보안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를 국가, 진흥원장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성과의 가액(價額)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진흥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

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⑤연구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감면·면제 및 사용 등)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제2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참여연구원(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9조제4항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진흥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성과활용조사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과제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련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세부 기준은 “협약변경 처리기준”에 따른다.)
3. 관리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관리규정 제13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연구개발과제 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2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8.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③진흥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진흥원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검증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진흥원장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로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생명정보 및

생물자원), 신품종(정보 및 실물)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공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의 수집·활용·공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심의·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통해 구축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희·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④연구시설·장비의 심의·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실 안전성 확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준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세부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기관의 장"으로 보며, 진흥원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관련규정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서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의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같음하며, 변경된 관련규정 등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9조(기타 준수사항)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진흥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내용을 진흥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서 및 붙임1의 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 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연구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서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한 정밀(현장)검증 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해석) 이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관련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21조(부가조건)